

# 서울지방세무사회-세무정보(2023-03)

## □ 3월의 세무일지

| 구 분    | 세 무 일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월 10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2월분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기한</li> <li>▪ 원천징수분 법인세·소득세·지방소득세(특별징수분) 신고납부</li> <li>▪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</li> <li>▪ 4대보험료 납부</li> <li>▪ 지급명세서제출(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·근로소득·기타 소득 중 종교인소득·봉사사료 지급분)</li> <li>▪ 연말정산 환급신청(반기별 납부자 포함)</li> <li>▪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</li> </ul> |
| 3월 15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고용·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월 27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2월 폐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</li> <li>▪ 2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기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월 31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2월말 결산법인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(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법인 제외)</li> <li>▪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·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</li> <li>▪ 12월말 결산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</li> <li>▪ 2월 지급분 일용근로자(폐업자의 일용근로자 포함)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</li> <li>▪ 2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</li> </ul>                 |

## □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·납부

### 가.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정사례(2023.2.27.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조)

#### ①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

-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·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
- 합계표준재무상태표 상 자기주식 증감,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분석,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,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등 추정

## ② 법인카드 사적사용

- 법인카드를 해외여행·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
- 신용카드 사용액, 해명자료를 검토,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,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등 추징

## ③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

-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
- 합계표준재무상태표(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)를 분석한 결과,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,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추징

## ④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

-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
-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,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,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(대표자 상여처분)하여 법인세 등 추징

## ⑤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

- 고가의 특정시설물(콘도, 휴양시설 등)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
- 법인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·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형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(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)을 검토한 바,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,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, 유지·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추징

## ⑥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

-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
- 과징금·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,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·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

**⑦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**

-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
-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, 해당 법인의 상호, 대표자, 사업장소재지,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,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, 법인세 추징

**⑧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**

-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
-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,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, 업무목적 사용내역(신용카드 사용 지역, 주유 내역,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)이 확인되지 않음,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(대표자 상여처분)하고 법인세 등 추징

**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**

-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
-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징

**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**

-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·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 소득을 과소신고
-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징

나. 공익법인의 신고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㉠ 출연재산 등 보고 :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「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」, 「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」, 「외부회계감사 보고서」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\*로 4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- ㉡ 결산서류 공시 :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. 1.까지 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.
- ㉢ 의무이행보고 : 지난해부터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「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」를 5. 1.까지 국세청(관할 세무서)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㉣ 공익법인의 주요 협력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| 협력의무               | 의 무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    | ▶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 | ▶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당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            |
| ③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·공시 | ▶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 20억 원 이상 |
| ④ 결산서류 등 공시        | ▶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⑤ 의무이행 여부 보고       | ▶ 종교단체를 제외한 구 지정기부금단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2021.1.1.이후 의무 이행하는 분부터는 4.30.로 개정됨.

[감수 : 서울지방세무사회 오의식 연수이사]

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완 일 올림